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다208719 판결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4. 22 선고 2013가합9600 판결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다20871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 16 선고 2014나2031323 판결

전문

원고,피상고인 1.a

2,.b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c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1.16.선고 2014나2031323 판결

판결선고 2015.7.9.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지상물매수청구권의 행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피고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민법 제640도, 제641조에 따라 해지되어 원상회복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이상 피고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 판시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지상물매수청구권의 행사 요건 및 강행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피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오직 피고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철거를 청구한다거나 이 사건 철거청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인정하여, 피고의 권리남용 항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상고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 판시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 사 김 판 사 이 주 심 판 사 김